제2항의 "별표2" 위탁사무에서 각각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제6조(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폐지대상조례 5건 중 3건은 조례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및 몽촌토성에 대한 위탁기간은 계약서에 의거 각각 3년으로, 서울놀이마당은 1년으로 계약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사용허가기간)의 규정에 의거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6조(위탁계약)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제4조(운영의 위탁)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2"와 같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사무는 "별표2"와 같다」로,

제7조(운영지원) 제2항은 공공부지 등에 대한 소유자가 반드시 서울특별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공부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4월 6일, 이정의의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시설은 제외하고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각 공공시설 위탁사무의 효율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운영의 위탁에서 위탁할 수 있는 시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공공시설은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사무로 하고, 운영지원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부지 등은 소유자가 반드시 서울특별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유재산으로 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보기가 어려운 몽촌토성을 제외함.

○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명시함.

○ 공공시설은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조문중 "위탁할 수 있는 시설"로 표기된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사무"로 함.

○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공공부지 등은 반드시 서울특별시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유재산이라고 함.

6.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8명 전원일치)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및管理運營委託에關한條例案은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

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2.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당사자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을 양도한 기업이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45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00년"을 "1999년"으로 하고, 제3항 중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4조 및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금융부채상환 및 사업양수도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개정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이 조례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제3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번지 91호소재 건물(청평화상가)내의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를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의 임차인에게 매각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 문화국(문화재과)란중 "몽촌토성"을 삭제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을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사무는"으로 하고, 별표2 문화국(문화재과)란중 "몽촌토성관리운영"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중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공부지등"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명칭 및 위치) ①서울특별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별표1"과 같다.

②공공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보에 이를 고시한다.

제 4 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위탁사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 5 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 6 조(위탁계약) ①시장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 7 조(운영지원)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비용의 징수)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휘·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휘·감독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시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시장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은 이 조례에 이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3. 서울특별시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5. 서울놀이마당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별표1]

서울특별시립공공시설

주관국(과)	시 설 명	비 고
보건사회국 (사 회 과)	○ 시립사회복지시설 －시립은평의마을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립맹인복지회관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곰두리체육센타 －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주관국(과)	시 설 명	비 고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 시립노인복지시설 －시립노인요양원 －시립양로원 －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 －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 －시립엘림경로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엘림노인요양원 ○ 서울특별시어린이집	
가정복지국 (여성복지과)	○ 시립사회복지시설 －시립영보자애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 시립아동복지시설 －시립소년의집 －시립동부아동상담소 ○ 청소년복지지설 －시립수서청소년수련원 －시립목동청소년회관 －시립문래청소년회관 －시립보라매청소년회관 －시립서울청소년회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시립구로지역청소년복지관 －시립근로청소년종합복지관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	○ 서울산업지원센터 ○ 서울애니메이션지원센터	
지역경제국 (중소기업과)	○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 시립직업전문학교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시립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 시립남부근로복지관 ○ 시립노동복지회관	
문 화 국 (문화재과)	○ 서울놀이마당	

[별표 2]

위 탁 사 무

주관국(과)	사 무 명	비 고
보건사회국 (사 회 과)	○ 시립은평의 마을 관리운영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맹인복지회관 관리운영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곰두리체육센타 관리운영 ○ 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관리운영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 시립노인요양원 관리운영 ○ 시립양로원 관리운영 ○ 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엘림경로원 관리운영 ○ 시립중계노인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엘림노인요양원 관리운영 ○ 서울특별시어린이집 관리운영	
가정복지국 (여성복지과)	○ 시립영보자애원 관리운영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 시립소년의집 관리운영 ○ 시립동부아동상담소 관리운영 ○ 시립수서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 시립목동청소년회관 관리운영 ○ 시립문래청소년회관 관리운영 ○ 시립보라매청소년회관 관리운영 ○ 시립서울청소년회관 관리운영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립구로지역청소년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근로청소년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	○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서울애니메이션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역경제국 (중소기업과)	○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관리운영 ○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관리운영 ○ 시립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시립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 시립남부근로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문 화 국 (문화재과)	○ 서울놀이마당 관리운영	